



## 편입학시행 규정

제정일	2020. 8.10
개정일	2022. 6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편입학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시기) 편입학은 매년 1학기 시작 전에 모집할 수 있다.

제 3조 (자격)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3학년 편입학의 경우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부(과)와 동일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2학년 편입학(2학년 1학기)

- 가.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
- 나.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(30학점 이상 취득) (개정 2022. 6. 1)
- 다.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서 1학년 이상 수료자(30학점 이상 취득) (개정 2022. 6. 1)
- 라.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(개정 2022. 6. 1)
- 마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3학년 편입학(3학년 1학기)

- 가.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
- 나.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(70학점 이상 취득) (개정 2022. 6. 1)
- 다.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서 2학년 이상 수료자(70학점 이상 취득) (개정 2022. 6. 1)
- 라.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(개정 2022. 6. 1)
- 마.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 4조 (모집인원) 각 학부(과)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서 정원내 결원(제적생) 수를 모집인원으로 하며, 정원내 재입학 인원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인원으로서 산출하여 모집할 수 있다.

제 5조 (신청과 허가) ① 편입학자 신청방법 및 선발방법은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르고 입학홍보과는 선발방법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사전에 공지한다.

② 편입학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는 대학의 입학홍보과에서 접수하여 심의한다.

③ 편입학자에 대한 최종선발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며 최종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

제 6조 (선발기준)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.

- 1. 전적 대학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
- 2. 평점평균이 동점인 경우 평점합계, 취득학점, 백분율 평균점수, 백분율 총점, 성적취득 과목수, 최근 졸업자 순으로 선발
- 3. 이후 동점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

제 7조 (학번부여) 편입학생의 학번 부여는 편입학과와 편입학년 재학생과 동일한 입학연도와 학과코

드를 사용하되 편입학 구분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 8조 (학점인정) 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 해당학과의 판정에 의하며 졸업학점의 1/2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 전공학점은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며, 교양학점은 편입학생의 졸업요건 총학점에서 졸업요건 전공학점을 뺀 학점을 최대 인정학점으로 한다.

②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은 제1항의 모집시기별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, 전공(선택)으로 각각 인정하며 우리 대학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
제 9조 (편입학 후 교과목이수) ① 편입생은 편입학 후 잔여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편입학 학과의 해당 학년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하다.

② 편입학 시 인정받은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재학 중 재이수할 수 없다.

제10조 (수업연한) 편입학자의 수업연한은 편입학과 해당 학년의 수업연한과 같으며 해당 학년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